

감사 결과 (무역안보관리원 제보사항 감사)

1. 감사 개요

☐ 감사배경

- 감사원은 무역안보관리원(이하 “관리원”)의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 제보건을 우리부에 이첩하여 감사 실시

☐ 감사 기간 : '25. 5. 12.~5. 23.(10일간)

☐ 처분요구일 : '25. 6. 13.

2. 감사 결과

○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 인사담당 ◆□△는 '23. 1월 3직급 승진임용을 하면서 정원을 4명 초과하여 승진임용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병가제도 운영 부적정

- 관리원은 업무상 병가 허가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와 신청직원 면담만으로 허가여부를 결정
- 또한, 병가 후 복귀 직원의 업무 재개 여부 판단 부재, 병가의 목적 외 사용 예방 관련 규정 미마련 등 병가제도 운영 부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 관리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제안서 평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계약규칙」에 신설하여 불합리하게 운용

3. 조치 내용

-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관련)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에 대해 “징계” *, 관련자 **♠■◆**에 대해 “주의” 요구
- (“병가제도 운영 부적정”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 병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와 연관 있는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산업보건의 등으로부터 직원의 근로 재개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마련하며,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계약규칙」 제49조의3 제2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